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12월 19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 제7조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최종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받고 있는바, 기금 운용사무의 일부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고,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함.
- 또한, 당연직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7조제3항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고,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기금 운용 전반에 있어 지방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(안 제7조제2항).
- 나.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고,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함(안 제7조제3항).

다. 안 제7조제3항을 수정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수정 사항을 반영함(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위원장 및”을 “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 - 나.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 - 다.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 - 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칙 제2조 중 “제7조제1항 및 제2항의”를 “제7조제1항 및 제2항, 제3항의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<u>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당연직 위원: 기획조정실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</p> <p>2. 위촉직 위원: 기금 운용, 기금 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<u>민간전문가</u>,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</p>	<p>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(이하 "위촉직 위원"이라 한다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</u> 되도록 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<u>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당연직 위원: <u>기획조정실장</u>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</p> <p>2. 위촉직 위원: <u>기금 운용, 기금 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</u>, 지역인사 <u>중에서</u>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<u>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당연직 위원: <u>부교육감, 교육행정국장, 기획조정실장</u>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</p> <p>2. 위촉직 위원: <u>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</u>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가. 서울특별시의회의원</u></p>

<p>④ (생략)</p>	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 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(생략)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<u>제7조제1항 및 제2항의</u>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</p>	<p><u>나.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</u></p> <p><u>다.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</u></p> <p><u>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 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<u>제7조제1항 및 제2항, 제3항의</u>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</p>
---------------	---	--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(이하 “위촉직 위원”이라 한다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교육행정국장이 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나.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다.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,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교육행정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당연직 위원: <u>기획조정실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</u></p> <p>2. 위촉직 위원: <u>기금 운용, 기금 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, 지역인사 중에서</u>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(이하 “위촉직 위원”이라 한다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부교육감, 교육행정국장, 기획조정실장</u>----- -----</p> <p>2. 위촉직 위원: <u>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</u>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나.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다.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</u></p>

<신설>

④ (생 략)

문가
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(현행과 같음)